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출처 : 농림수산물부 공문 2013.01.25 (오리부문 발췌 정리)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1. 예산 배분 내역

〈 기본 원칙 〉

① (축종별) '11년도 축종별 생산액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 한육우 19.3%, 양돈 30.9, 낙농 11.2, 양계 25.5, 오리 9.5, 양봉 2.5, 양육 0.6, 흑염소 0.5

② (시도별) 시도별 가축사육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 시도별 통계청 가축동향('12년) 및 농식품부 기타가축통계('11년) 결과 축종별 사육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 2013년도 축종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축종별	생산액 ('11년)	생산액 비중(%)	2013년도 지원계획(안)		계
			보조방식	이차보전방식	
한육우	2,839,300	19.3	38,544	41,035	79,578
양돈	4,544,600	30.9	61,693	65,680	127,374
낙농	1,651,700	11.2	22,422	23,871	46,293
양계	3,745,900	25.5	50,851	54,137	104,988
오리	1,396,600	9.5	18,959	20,184	39,143
양봉	362,900	2.5	4,926	5,245	10,171
양육	87,008	0.6	1,181	1,257	2,439
흑염소	75,420	0.5	1,024	1,090	2,114
합계	14,703,428	100.0	199,600	212,500	412,100

■ 2013년도 시도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조방식	이차보전방식	계	비율(%)
세종	3,350	3,567	6,917	1.7
부산	195	209	404	0.1
대구	737	786	1,523	0.4
인천	1,090	1,158	2,248	0.5
광주	277	294	571	0.1
대전	126	135	261	0.1
울산	930	989	1,919	0.5
경기	36,768	39,146	75,914	18.4
강원	8,209	8,739	16,948	4.1
충북	14,836	15,795	30,631	7.4
충남	30,154	32,102	62,256	15.1
전북	25,786	27,454	53,240	12.9
전남	28,401	30,236	58,637	14.2
경북	25,972	27,652	53,624	13.0
경남	17,851	19,003	36,854	8.9
제주	4,918	5,235	10,153	2.5
계	199,600	212,500	412,100	100.0

■ 2013년도 시도별 오리농가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오리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104	111	215
경기	1,496	1,592	3,088
강원	21	22	43
충북	2,536	2,699	5,235
충남	935	996	1,931
전북	4,067	4,330	8,397
전남	8,312	8,849	17,161
경북	309	329	638
경남	1,113	1,185	2,298
제주	66	71	137
계	18,959	20,184	39,143

» 축산수첩

2. 사업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전업농기준	규모	지원방식
기업농 이상	오리 15천수 이상 *전업농의 3배	이차보전(용자)
전업농	오리 5천수 이상 (종오리 5천수, 부화장 1회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보조방식

● 지원조건

- 보조방식(2,140억원) : 보조 30%, 용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2,125억원) : 용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오리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용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 부화장 : 부화기기(발육기, 발생기), 공조시설, 오페수 처리시설, 내부기자재(소독시설,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전기시설 등), 부화중지란 처리기
 -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지원 제외 〉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 (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 (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젓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 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